<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 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 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u> <u>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u> 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181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8.02 LBRIDGE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5.12

라브리지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커커]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커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 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 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8길 19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543-2326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511-232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543-2326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 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라브리지 외 2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8길 19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	
커커	2000.07.07.		2000.07.07	이 승 철	0	2-543-2326	02-511-2327
	법인등록번호 11011		1-2020040	사업자등록번호		211-86-6208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8길 19			
대표이사	이 승 철/ 주식회사 커커	라브리지 외 2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 1—1 1 1 1		이 승 철	02-543-2326	02-511-232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	멸시 강남구 언주로 [·]	148길 19		
•	사용인 심 해 식/ (임원) 주식회사 커커	라브리지 외 2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00)			이 승 철	02-543-2326	02-511-232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라브리지]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칭	라브리지	
상 호	라브리지 OO점	
상표(서비스표)	L BRIDGE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9,831,534	1,312,010	8,519,523	9,229,306	340,044	1,100,896			
2023년	11,566,263	1,479,341	10,086,922	9,767,852	657,019	1,567,399			
2024년	13,593,247	2,845,899	10,747,347	7,964,039	-363,247	660,424			
	전체 재무상황은 별지 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고려서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연 식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이 스 처	디표이나	2000.7.~현재	대표이사	주)커커 대표이사		
가맹사업	이 승 철	대표이사	2005.2.~현재	대표이사	주)BOE 대표이사		
관련임원	11 411 11	사내이사	1999.11.~현재	원장	이철헤어커커 일산롯데점		
	심 해 식	사네이사	2009.09.~현재	이사	주)커커 사내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급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4년 12월 31일	2	0	1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라브리지]이외에 [이철헤어커커,마끼에]라는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	구분	기간	사업내용					
기메버버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08.10 ~ 현재	이철헤어커커(등록번호:20080100643)라는 브랜드의 이미용 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커커	(수)커커		2013.03 ~현재	마끼에(등록번호;20130100192)라는 브랜드의 이미용 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등록 및 등록신청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등록 여부(일자)								
라브리지 (상표권)	-	-	-	-	-				

- ▶ 당사의 상표권은 관계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라브리지] 가맹사업 현황

1. [라브리지]을 시작한 날: 2021년 10월 28일

2. [라브리지]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커커	라브리지	이승철	2022. 1.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8길 19

3. [라브리지]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니르니시	이미용	미용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라브리지]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714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6	36	-	36	36	0	33	33	0
서울	7	7	-	7	7	_	7	7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1	1	-	1	1	-	1	1	-
대전	1	1	-	1	1	-	1	1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21	21	-	21	21	-	19	19	-
강원	-	-	-	-	-	-	-	-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2	2	-	2	2	-	1	1	
전북	-	-	-	-	-	-	-	-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	-	-	-	-	-	-	-	-
경남	1	1	-	1	1	-	1	1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라브리지]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9	27	-	-	-	36
2023년	36	-	-	-	-	36
2024년	36	-	-	3	-	33

6. [라브리지]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당사는 이외에도 [2]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사숙/이르	여어교리	정보공개서	공개서 어른 가맹점/직영점 수			
구분	상호/이름	정입표시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입공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커커/	이철헤어커커	20080100643	이미용	168/0	162/0	146/0
	이승철	마끼에	20130100192	이미용	18/1	18/1	17/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24년 평균매출액 관련해서 당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일부 물품을 제공하지만 해당 물품제공은 실제매출액을 산정하기에는 매장별로 상당한 차이기 발생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직접 제공한 매출액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매출액 산정 방식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확인을 위하여 Web-POS시스템등의 영업관리 프로그램의 자율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개별 가맹사업자의 이용률 저조로 가맹사업본부에서 가맹사업자의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별 신용카드 매출액 자료 등을 토대로 평균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식회사 커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라브리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라브리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33개	108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라브리지]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라브리지]외 2개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	단위: 천원, 부기	비고		
丁世	다 누	기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미포	
합계		2024.1.1.~12.31	333,686	333,686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	ᄱᄱᇄ	(비공개)		2024년 말 손익계산서 기준
	(비공개)	-		(419711)	(419711)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권을 발행해 가맹금을 받고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SGI서울보증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커커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라브리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6,600				
상권분석 및 입점활동	1,650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 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반환시 당사에서 소요된 실제비용을 제외한 전액 반환
Open집체 교육 및 현장 교육 등 제공대가	3,300	계약체결 후 다음날 까지	개설 시 Open교육 등 서비스 미 제공 시 반환	개설 시 Open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시 소멸되어 반환되지 않음	
브랜드밸 류관리대 가	1,650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 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교육진행시 반환되지 않음

▶대형 마트 입점시 가맹금은 [11,000]천원입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체결 후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시 정산
계약이앵모등급	[5,000]	다음날까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1,600]
상권분석및입점활동	1,650
Open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등제공대가	3,300
브랜드밸류관리대가	1,650
보증금	5,000(부가세없음)

▶ 대형 마트 입점시 가맹금은 [11,000]천원으로 예치 가맹금은 [16,000]천원입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30,900~ 152,900]	[4,363~5,097]			99m² 기준
인테리어/설 비	(주)커커	75,900	2,530	계약금:공사계 약 후 1일 이내 중도금:공사시	공사 전 계약취소	3.3㎡ 늘어날 때마다 [2.530]천원추가 부담
소품등 (간판)	(주)커커	33,000~44,000	1,100~1,467	작 후 15일 까지 잔 금:OPEN 3일 전 까지	공사 전 계약취소	
최초 제품 비용	(주)커커	22,000~33,000	733~1,100	납품 이전 선납	협력업체 주문 전	

 \times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 있습니다.



※**별도비용**: 철거, 증설, 소방, 냉난방, 수도배관, 음향, 외부테라스, 각종 가구류, 간판 등 견적 외 품목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253천원(**3.3m²당 금액/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FC사업부 (전화:02-547-2326)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 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통행인의 수, 교통 량, 시장특성, 통행인의 구매습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별 특성 등 을의 점포선정에 대해 조 언을 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에 따른 최종 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며 선정 후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스타일리스트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종업원 1.점장 2.교육실장 3.스타일리스트 4.인턴사원	스타일리스트(인턴)를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당사가 실시하는 능력평가를 통하여 등급을 결정 받아, 스타일리스트 등급별로 당사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함	○점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교육실장은 스타일리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라브리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ᆲᆙᇴᇥ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단위: 천원, 부 반환될 수	<u> </u>		
1 E	718-110		시티시티	00±0	없는 사유	2172		
영업표지 사용료		매월 440 <매장크기별 차등제>	매월 15일, 25일	해당없음 (후불제)	해당없음 (후불제)	'21년 기준		
광고 분담금 (전국광고)	(주)커커	사전통지 * 통상 :가맹본부(20%)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광고 집행시			
광고 분담금 (지역광고)		전체가맹점사업자(80%)	날로부터 7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반환 안됨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시행업체	판매금액의 20%	결제 시					
교육훈련비		교육내용에 따라 사전공지	교육 실시 7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퇴사 또는 지점 사정에 의해 퇴소할 경우	입과 후 결석에 대한 교육비 반환안됨			
환경부담개선 비용	(주)커커 또는	가맹본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지정업체	실비						
상품공급비		-	선납	-	_			

영업표지사용료 지역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택1)	20평	30평	40평	50평이상	지역기준	비고
영업표지 사용료	440	550	660	770	지역, 상권에 따 라 조정	제품 구매만 대체 할 경우, 영업 표시 사용료의 1.75배 적용시켜 진행하여야한다.
제품사용료	770	880	1,100	1,300	-	-

▶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사전 통지를 하고 분담금이나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 영업분석자료	실제 영업사항을 조사	수시 (별도시스템을 통한 정기점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 개설 후 3개월간은 매일 점검 ○ 3개월 이후부터는 수시 점검	문의:FC사업부 (지역관리책임제)

3. 가맹사업자의 부담금의 감면제도 운영



- ※ 본 제도는 가맹본부의 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 도 감면 또는 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 반드시 감면사유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서 작성 시 명시하여야 한다.
- 1) 다음의 사유로 인해 예치가맹금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 ◈ 본사직원 또는 직영점 5년이상 근속자 50% 감면할 수 있다.
 - ♦ 기존 가맹사업자가 추가로 가맹사업을 할 경우 50% 감면할 수 있다.
- ◈ 대규모점포(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입점시 당사와 대규모점포간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입점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기존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리뉴얼 혹은 부분공사를 통해 당사의 입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사의 다점 포전략을 위해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할 수 있다.
- ◈ 우수지점 원장의 소개 감면할수 있다.
- -매장 이전 없이 실질적인 매장승계(권리금 지급 없이 현 매장운영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이루어 지는 형태로서 가맹본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 -특수상권에 한하여 본사의 심사를 통하여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 (예: 신도시, 유통몰등 상권 미형성으로 인하여 초기 매장 운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비활성화 유통몰)
- 2) 다음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 ◈ 본사직원 또는 직영점 5년이상 근속자 감면할 수 있다.
- 대규모점포(예: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입점시 당사와 대규모점포 간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입점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 ◆ 기존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리뉴얼 혹은 부분공사를 통해 당사의 입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사의 다점 포전략을 위해 한시적으로 감면을 할 수 있다.
- ◈ 채무,손해의 배상의 담보목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상기 조건외 특별히 담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일정한 요율의 감면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 ◈ 서울보증보험으로 가능
- 3) 다음의 사유로 인해 영업표지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 ◈ 가맹본부가 매출분석을 통해 현저히 매출이 저조하고 담당 SV가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내에 경영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 감면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 ◈ 대규모점포(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입점시 당사와 대규모점포간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입점하는 경우 50%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 ◈ 프랜차이즈 사업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 4) 매장의 상권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매출활성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지급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해당 감면제도는 현 매장의 상권이 일반적인 가맹점보다 열악한 경우 또는 사전에 폐점 일정이 확정된 매장에서 새로운 점주가 영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점된 매장에서 새롭게 영업하는 가맹점주의 경우

매장이전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현 매장이 폐점절차를 거치고 신규가맹점주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가맹사업법상의 갱신청구권을 새롭게 보장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이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고려하여 영업의 안정화를 위해 예치가맹금의 납입이나 해당금액만큼의 물품구입 또는 포인트 적립 등의 대체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4.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기간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기간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는 당 사의 사전 승인없이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 혹은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의 승인을 얻어서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당사에 오픈교육비등에 대한 대가 [6,600]천원과 계약이행보증금 [5,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가맹사업법상 10년 간의 갱신청구권보장과 신규오픈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길원하는 경우(신규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양도인은 원활한 양도양수를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규약,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제 21 조 (원상회복)

- 1.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을은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갑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한다.
 - 나. 갑으로부터 지급된 메뉴얼과 일체의 인쇄물 및 상표가 있는 용품을 즉시 파기 또는 반환한다.
 - 다.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정보 서류 일체를 반환 또는 파기한다.
 - 라. 가맹점 매장의 가구, 비품에 표시한 모든 상표를 파기한다.
 - 마. 가맹점 매장 내 외장에 표시된 갑의 영업표지 등 라브리지의 이미지를 완전히 삭제 또는 철거한다.
- 2. 제1항 조치에 의한 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하며 갑이 직접 이행하였을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 3. 을은 제1항 조치의 이행이 끝난 후 반드시 갑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갑의 가맹계약해지확인서 양식에 부합한 서류를 첨부하고, 갑의 원상회복의 확인을 받은 연후에야 제 6조의 규정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라브리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설비・상품・원 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 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 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당사가 정하는 품목과 공급업체 등은 당사의 경영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 당사는 그 변경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한 후 시행하기로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스버	품목(단위:1ea)	공급단가		78
문민		상한	하한	丁 正
1	해당없음			

당사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 자율구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라브리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라브리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라브리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컷트		 1회 위반: 구두 경고		
 펌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세품을	[1최 되면 1구 8호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ӷᄖᆋᇧ사ᄑᄑᄆ	
염색	l 판매약 수 없음		[별첨4]상품품목 	
헤어케어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30%초과 할인을 제한 한다.

제 14조 (홍보,행사,광고,판촉,제휴서비스)

5.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개별적인 할인행사는 실시할 수 없고, 온라인, 오프라인 기타 홍보, 행사, 광고, 판촉 등에 할인율은 최고30%이내로 제한한다.

제 15조 (가맹점 운영방침)

1. 을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한 원자재 또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해야 할 제품은 지정제품으로서 품목은 아래와 같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서면으로 별도 공 지한다.

갑은 지정제품에 대해서 을의 매출증대와 표준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하기위해 의무약정을 할 수 있고, 을은 지정제품에 대해서 매출 대비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갑이 지정한 권장제품 정식 공급채널 에 의해 정품을 공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을은 모든 제품과 소모품에 대한 결제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 금액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상기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을은 제품과 용역의 가격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갑과 협의를 해야 한다. 품목별 균일가격시행은 전략적 단기행사에 한하며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이미용업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이철헤어커커, 마끼에, 라브리지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당사가 지정한 특수상권(대학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유통산업촉진법상 대규모 점포 포함)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부여하지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않고 별개의 상권으로 봅니다)	

다만, 백화점, 쇼핑몰,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복합다중시설내와 수도 권 및 광역시의 경우 6차선(그 이외지역은 4차선)이상의 도로의 건너편은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동일업종이 아닌 영업표시를 가진 가맹사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동의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	여부 회신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	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정되는 경우	지역 변경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라브리지'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라브리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라브리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 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4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 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4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조	
○ [라브리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9조
1.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해지
	4조 계약갱신
2. 다르 기매저나어디에게 투사적으로 저유다는 게야ㅈ거이나 여어바치은 은이	19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계약의해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4조 계약갱신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9조
해당하는 갑의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해지
①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l
취득에 관한 사항	4조 계약갱신



②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제4조 제1항 ③항목에 정하는 사항 	
4. 을이 본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개점하지 않은 경우	19조 계약의해지
5. 을이 영업표지사용료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19조 계약의해지
6.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9조 계약의해지
7.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조 계약갱신
8.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4조 계약갱신
9.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조 계약갱신
10. 가맹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1. 영업표지가 사용되어지는 모든 구조물과 싸인물, 그리고 안내장, 할인권 등 모든 인쇄물의 제작 및 사용과 통신, 영상화면에 관한 전지적 방법을 포함 또는 응용한 PC, 인터넷 네트워크의 사용은 반드시 갑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위1항에 대해 갑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조 영업표지의 사용제한
 12. 을이 아래 4가지 항목을 위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가맹점의 내장 및 외장 (간판, 사용표지의 글자체, 점포 장식 일체)을 설계 시공 또는 디자인함에 있어서 갑이 정하는 매뉴얼 및 지도를 을은 따라야 한다. 나. 을은 가맹점 내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 갑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디자인이 되어 있는 설비용품(기구, 집기, 비품 등)을 갑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별도 구입할 수 있다. 다. 을은 직원 유니폼, 컷트보, 고객가운 등의 미용소모품류 일체는 갑이 정한 디자인에 따라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갑이 제품의 변질, 청결상태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 을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을은 갑이 지정한 신용카드거래 승인대행사(벤사)로부터 카드승인서비스를 공급 받아야하며, 갑은 을의 카드사별 매출자료를 가맹사업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10조 점포설비 및 장식
13. 을은 가맹점의 개장 후 개조, 보수를 원할 경우 갑에게 승인을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 만일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개조, 보수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조 점포설비 및 장식
14. 갑은 을의 점포설비 및 장식을 담당 슈퍼바이저를 통해 매년 2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동일한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최초 설치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라브리지 브랜드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 시설의 부분 또는 전체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을	10조 점포설비 및 장식



해지할 수 있다.	
15. 을은 갑이 지정하는 교육 및 회의(행사)에 대상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의무	127 7001
또는 필수교육을 계약기간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조 교육이수
16. 을 또는 을의 직원은 갑이 지정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교육일자 5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 서를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127 70014
교육에 참석치 않거나 수료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12조 교육이수
있다.	
17.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 전략 혹은 대규모점포의 판촉행사 목적으로 특정 지역	14조
가맹점, 대규모점포 입점 가맹점들이 동시에 시행하는 제휴 서비스 내용에 적극 참여를	· 홍보,행사,광고,
권유할 수 있다.	판촉,제휴서비스
10 기매되었지는 기매티티이 되저 소이어이 개변적이 하이해되는 시되하 소 어디	14조
18.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없이 개별적인 할인행사는 실시할 수 없다.	홍보,행사,광고,
On, Off Line 할인율은 최고30%로 제한한다. 	판촉,제휴서비스

- 19. 을이 본 조항을 위반할 시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을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한 원자재 또는 상품을 사용하여야한다. 사용해야할 제품명은 별첨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서면으로 별도 지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나. 을은 갑이 정한 가맹점 권장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권장사항의 내용은 담당 슈퍼바이저를 통해 수시로 서면 또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공지한다.
 - 다. 을은 매장운영을 위해 점장과 교육실장을 임명한다.
 - 라. 을은 항상 미용실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외부 고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 마. 을은 계약기간 동안 영업매출 정보를 공유한다. 공유 방법은 서면 또는 온라인 매체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 바. 을은 매일 갑의 홈페이지와 싸이월드 등 갑이 지정한 매체를 통하여 지시한 전달사항을 숙지하고 게시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사. 을은 갑이 정한방식에 따라 영업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아. 을은 제품과 용역의 가격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갑과 협의를 해야 한다. 품목별 균일가격시행은 전략적 단기행사에 한하며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자. 을이 갑의 브랜드 가치 및 명예에 대외적(대중매체, 온라인 등)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차. 을은 갑이나 갑의 임직원 및 기타 가맹점주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신체적, 언어적 폭행 또는 폭력 등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카 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타. 을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소모품과 제품의 신청은 갑이 정한 방식에 의하며 선결제가 원칙이다.
 - 파. 을은 영업상의 과실, 상품의 하자, 점포의 화재 등 갑 또는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한 다음의 배상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오픈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5조 가맹점 운 영방침



가. 화재보험		·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다. 뷰티배상책임보험	i	
20.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이 정한 클레임 대응 지침에 따르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2회이상 동일한 사안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6조 ·	클레임
21 을은 본 계약을 통해서 학습된 경영상, 영업상 취득한 갑의 매출정보, 고객정보, 매장운영정보, 운영노하우 등의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이 이를 위반하여 갑 또는 타가맹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은 본 계약은 해지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을은 갑 또는 타가맹점 에게 배상한다.	17조 의무	비밀보안
22 을은 본 계약 기간 동안 갑의 계약과 동질의 계약을 타 업체와 할 수 없다. 을이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조 의무	경업피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 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19조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19조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9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19조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 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19조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19조
o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19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 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 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 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 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2-543-2326)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 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의 양도에 관한 가맹 계약서 조항

제 20 조 (권리의 양도)

- 1.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의 사전 승인없이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2. 제1항에 따라 갑이 을의 영업양도를 승인한 경우, 잔여기간 동안에 한하여 갑과 을은 이 건 계약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도록 한다.
 - 이경우 을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갑이 정한 바 대로 오픈교육비(현장교육 대가포함)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정해진 기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영업양도를 거부 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대해서 양수인이 신규계약을 원하는 경우와 **폐점이 확정된 매장에서 신규로 오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을은 갑에게 권리양도양수에 대한 컨설팅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팅용역계약에서 책정되는 금액을 컨설팅비용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 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가능	가 맹점 사 업 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 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라브리지]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이·미용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 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 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 지 → 완료	문의 (02-543-2326)

경업금지에 관한 가맹 계약서 조항

제 18 조 (경업 피지 의무)

- 1. 을은 본 계약 기간 동안 갑의 계약과 동질의 계약을 타 업체와 할 수 없다.
- 2. 을이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라브리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10:00 ~ 23:00 (13시간)	365일	문의: 당사 (02-543-2326)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여부

권장 종업원수※[99]m² 기준	직접 근무 여부
스타일리스트 : 5 명	
인턴 : 5 명	해당 없음
관리자 : 1 명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있으며, 당사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 공통항목 (16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2회/년	FC사업부		
기타항목 (2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상시	FC사업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					
는 감독이 끝난 후, 주식회사 커커에 보관하게 됩니다.					

공통항목 점검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기타항목 점검표

관리자 면담	특이사항	
인터뷰	매장운영 특이사항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라브리지]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분담금 (전국광고)	별도 협의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주들의 행사동의→ 행사 시작 (단, 광고 성격상 분담비율을 조정하여야 함이 상당할 경우 조정가능함)	- 대중매체 광고 -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광고분담금 (지역광고)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판촉행사		행사 계획 공고→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행사 시작	- 월별판촉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가 승인한 시안 및 운영규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광고 및 판촉활동 관련 가맹 계약서 관련 조항

제 14 조 (홍보, 행사, 광고, 판촉, 제휴서비스)

- 1. 갑은 을에게 광고 및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청구 할 수 있다.
- 2. 광고 및 홍보비에 대한 예산의 집행은 갑이 행하며, 갑은 그 결과를 을에게 일정 서식으로 통보한다.
- 3. 을은 갑이 계획하여 진행하는 홍보, 행사, 광고, 판촉, 제휴서비스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
- 4. 갑은 을에게 가맹본부의 영업 전략 혹은 대규모점포의 판촉행사 목적으로 특정 지역 가맹점, 대규모점포 입점 가맹점들이 동시에 시행하는 제휴 서비스 내용에 적극 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다만, 광고는 해당지역의 "을"의 과반수 반대가 있는 경우에, 판촉은 해당지역의 "을"의 30%이상 반대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개별적인 할인행사는 실시할 수 없다.

On, Off Line 할인율은 최고30%로 제한한다.

- 6. 을은 소속 직원들에게 갑이 정한 홍보, 행사, 광고, 판촉 행위에 대해 숙지시켜 전 직원이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7. 갑은 본조 각항에 대한 을의 위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 및 가맹사업상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D-50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사업 설명 · 상담 ○ 인근가맹점 10개 리스트 제공 D-50~48 ○ 가맹희망자 상담 ○ 입지선정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6~45(2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5 가맹금 예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증서 D-45 [42,000~53,000] 전달 ○ 도면협의/인테리어 계약 및 공사일정 점포실측/설계 D-45~30(16일) 확인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착수(자재발주 및 현장투입) D-30~28 인테리어 공사 ○ 공사실시/ 상품, 원부자재 입고 D-28~3(25일) [170,500~192,500] 상품, 원부자재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D-day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점포 개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정비, 인테리 어 등의 객관적 으로 경우 는 경이나 결하여 모든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용을 제외한	O 점포의확전을 수반하지 않는 기소20%지 환경어점 또는 전을 모으는 전을 보는 전을 검포환경1 전설1 전상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별도의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이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의 끝난날부터 90일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지급*********************************	일로부터 3년이내에 가맹본부의 착임없는 사유로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본부부당액 중잔이 하다는 기간에 비하는 지급하지 아니하거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새롭게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 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 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협의하여 부담	문의 : 당사 (02-543-2326)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당사 (02-543-2326)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라브리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운영교육/행사

당사는 라브리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7-1-1 운영교</u>	<u>l육/행사</u>					(원,VAT포함)
회의명	대상자	주요내용	교육방식	횟 수	비용	비고
오픈교육	전 직원	매장 오픈필수교육	교육	1회	무 상	
신입사원	신입	입사시 필수교육	교육	1회/재직시	실비	3개월내
마케팅 컨퍼런스	점주	매장운영 필수교육	회의/강의	1회/月	본사지원	
주니어쇼	전직원	졸업행사 의무참석	행사	1회/年	실비부담	모델비

7-1-2 기초교육

교육명	대상자	주요내용	교육방식	횟 수	비용	비고
Seed	인턴사원	운영 필수교육	실무/교육	8회(1회/2주)	실비,교재비	6개월
Root	인턴사원	운영 필수교육	실무/교육	8회(1회/2주)	실비,교재비	6개월
Tree	인턴사원	운영 필수교육	실무/교육	8회(1회/2주)	실비,교재비	6개월
Fruit	인턴사원	운영 필수교육	실무/교육	14회(1회/1주)	실비,교재비	6개월
Junior	인턴사원	운영 필수교육	실무/교육	15회(1회/1주의	실비,교재비	6개월

7-1-3 보수교육

교육명	대상자	주요내용	교육방식	횟 수	비용	비고
서비스교육	지점	서비스 의무교육	발생시	1회	실비	컨플레인 발생지점

▶ 보수교육은 계층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개략적인 설명만 드립니다.

1) 운영교육/행사

정보제공, 의사전달, 시정명령 등 본사의 교육소집명령에 의한 모든 교육을 통칭합니다. 가맹계약 후 운영능력 습득을 위한 기초소양(오픈)교육, 현장지도 교육, 가맹점 운영 중 매년 본사의 영업방침등에 대한 변경사항 또는 가맹점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마케팅교육, 경쟁력강화, 판매기법, 서비스향상, 시스템, 신제품교육, 매뉴얼 준수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2) 기초교육

가맹점 사업장의 미용시술부문 종사자가 미용시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반 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3) 보수교육

주식회사 커커 가맹 프랜차이즈의 기술적인 통일성 제고와 가치를 창조해내기 위하여 스타일리스트들이 일정 주기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4) 기타교육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에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가맹점의 서비스제고 와 영업력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2. 교육・훈련의 주체

- 1) 본사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가맹점의 계약자(운영자), 근무직원 모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 사업자는 채용직원에 대한 기본인사(경력)정보와 교육훈련 이수사항을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사에 통지하여 본사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본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3)기초과정교육 및 일정단계 이상의 기술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가맹점의 운영, 미용시술, 고객응대등의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 ▶ 단, 스탭, 매장관리부문 입사자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은 입사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하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수 있습니다.
 - ▶ 미용시술 부문 입사자는 본사의 기술테스트 및 경력심사에 따라 지정하는 본사 내부 교육과정을 본사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수하고자 할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하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ㆍ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관련 가맹 계약서 조항

제 12 조 (교육이수)

- 1. 을은 갑이 지정하는 교육 및 회의(행사)에 대상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의무 또는 필수교육을 계약기간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을은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2개월 내에 갑이 시행하는 신입사원교육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 3. 갑이 실시하는 교육이 유료교육일 경우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교육비는 교육 신청시에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4. 을 또는 을의 직원은 갑이 지정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교육일자 5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교육에 참석치 않거나 수료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5. 을의 직원채용으로 말미암아 그 직원과 이해관계 있는 기존 또는 인근의 가맹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을 간의 조정판정에 따라야한다.
- 6. 을은 본 계약기간 중 새로이 신설되는 서비스, 매장운영, 기초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7. 본 조의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인 교육일정, 대상자, 주요내용, 교육방식등에 대해서는 별첨하며 갑의 가맹점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8. 을 또는 점장, 교육실장, 스타일리스트, 인턴사원 등이 위 교육에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9. 갑의 브랜드 가치유지와 을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을은 그 직원들은 갑의 교육에 반드시 참석시켜 서비스 품질을 유지시켜야 한다. 매장에 근무하는 해당 레벨의 대상 직원이 갑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도 을의 임의적 판단으로 승급을 시키거나 계속 근무시킬 경우 본 계약 제19조 1항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을의 직원들이 이수해야 할 레벨별 필수 교육은 제12조에 명시된 바와 같되, 그 교육의 내용은 갑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13 조 (회의의 개최 및 참석)

- 1. 을은 갑이 계약기간내 가맹점주, 점장, 교육실장, 디자이너, 인턴사원등을 대상으로 정기,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2. 회의내용과 일정은 별첨하며 갑의 가맹점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3. 을 또는 점장, 교육실장, 스타일리스트, 인턴사원 등이 위 회의에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프랜차이즈팀(02-543-2326)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필수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